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04호 2022. 4. 4.(월)

【규 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757호(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1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53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안)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54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24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26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4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 띄어쓰기 등 정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2. 4.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757 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로 한
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를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로, “이하 의원” 을 “이하 “의원” ” 으로 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으로 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9조----- ----- ----- ----- -----, ----- ----- ----- -----.
제3조(사무의 인계 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제3조(사무의 인계 등) ①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u>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	제1조(목적) ----- 「지방자

<u>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u>의회</u>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u>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u>의원</u>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u>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u>」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u>」와 「<u>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u>」을 준용한다.	<u>치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u>----- ----- ----- -----.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u>이하 “의원”</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징계) ----- ----- ----- ----- -----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u>」 ----- -----. 제17조(준용규정) ----- --, ----- -----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u>」 --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u>」-----.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안

2. 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기관별 부동산 취득의 제한(‘21.4.)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 관리
- 부동산 유관부서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

3. 주요내용

-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안 제3조)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적용대상 및 부동산 범위 지정(안 제4조)
 - 부동산 유관부서 근무자 및 상급 감독자
 -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 예외적 취득의 신고 (안 제6조)

- 예외적 허용 부동산 취득시 30일 이내 신고 및 취득 사유 소명
- 의무 위반시 조치 (안 제8조)
 - 직무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자진 매각 요구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2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감사실 (☎749-7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133, FAX 749-7049
- E- mail : parkshjimin@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안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

②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1년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그 밖의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제4조 관련)

연 번	실·국명	부서명	직제규정	주요 업무내용	제한부동산의 범위	취득제한기간	
						시기	종기
1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대상 사업 범위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및 협의	초안공고 및 설명회(공청회) 종료
2		공원녹지과		공원, 녹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공원, 녹지 예정지	계획 수립	사업 인가
3	도시관리국	건 설 과		도로·하천 등의 건설·개발 관련 업무	도로 개설, 하천 개발 예정지	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고시
4		도시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	민간제안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종료
5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의 '제한 부동산 범위 '에 속하는 지역	제한부서 협의 시	사업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시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부서 전입일	부서 전출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사업 대상지역	민간제안 및 사업계획 수립
6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개발사업의 교통영향 평가 심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심의안건 접수 또는 검토 시	승인·인가·허가 완료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2019. 5. 9.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고, 기후변화 대응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및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사항 정비(안 제4조)
- 수의방법 금고지정 절차에 관한사항 정비(안 제6조 제5항)
-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문제목 정비(안 제8조)
 - (금고의 중도해지) → (금고약정의 해지)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 1, 별표 2)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21.(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세무 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소: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032-749-7531, FAX : 032-749-7459
- E- mail : kw1150@korea.kr
- 연수구청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4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심사”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계약”을 각각 “약정”으로 한다.

제8조 제목 “(금고의 중도해지)”를 “(금고약정의 해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5	
	소 계	8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2 2	
	소 계	21	
3. 구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7 5 6 3	
	소 계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2	
	소 계	24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소 계	7	
6. 그 밖의 사항	소 계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2	

[별표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모든 세부항목별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구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 (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OCR 센터 등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그 밖의 사항(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 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광역시 연수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기 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 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그 밖의 ----- ----- ----- -----.
제3조(금고 지정기준) ① (생 략) 1. (생 략) 2. <u>구</u> 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u>지역주민</u> 이용 편의성 4. ~ 5. (생 략) ② (생 략)	제3조(금고 지정기준) ① (현행 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u> ----- 3. <u>구민</u> 이용 편의성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⑥ (생 략) ⑦ <u>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 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u>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u><삭 제></u>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정절차)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 ② (생략)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정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심의 -----

-----.

<삭 제>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약정----, 약정 -----, -----

-----.

제8조(<u>금고의 중도해지</u>) ① ~ ③ (생략)	제8조(<u>금고약정의 해지</u>)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u>기타</u>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그 밖</u> <u>의</u>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30.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폐지 도로명주소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옥련동 581-5	청량로109번길 7	2022.03.30.	건물멸실
송도동 11-108	하모니로177번길 27	2022.03.30.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토지정보과(☎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 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 등)을 폐지일로 하여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 폐지고시를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건물번호 부여 신청 후,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4.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폐지 도로명주소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옥련동 369-3	청량로 1080-14	2022.4.4.	건물멸실
옥련동 369-5	청량로 180-16	2022.4.4.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토지정보과(☎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 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 등)을 폐지일로 하여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 폐지고시를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건물번호 부여 신청 후,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